

일본에 있어서의 광견병 방역대책 현황

강영배* · 한홍율**

일본은 광견병(rabies) 예방을 위하여 일찌기 소화 25년(1950년)에, 구마모토현에서 선출된 수의사 출신 의원 原田씨 등의 제창과 노력으로, “광견병 예방법(소화 25년 8월 26일, 법률 제 247호)”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효과적으로 방역사업을 벌이고 있다.

일본은 현재, 광견병 비발생국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실제로 인체발생은 물론, 각종 동물에서의 광견병 증례가 보고되지 않고 있다. 개와 고양이의 광견병은 1956년에 종식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소와 양, 염소에서는 1953년, 말에서는 1952년, 돼지에서는 1951년, 그리고 야생동물에서는 1956년 이래 발생되지 않고 있다.

“광견병 예방법”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일본내의 개는 모두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며, 광견병의 발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1회 이상 전체 개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개의 수출입 검역규칙을 제정해놓고 관리하고 있다.

본편에서는, 일본의 “광견병 예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그리고 “개의 수출입 검역규칙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1. 광견병 예방법

이 법은 소화 25년(1950년)에 법률 제 247호로 제정되었으며, 전문 5장 2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이법률의 주관부서는 후생성이다.

일본의 광견병 예방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 제 1 장 총칙(제 1 조로부터 제 3조까지)
- 제 2 장 통상조치(제 4조로부터 제 7조까지)
- 제 3 장 광견병 발생시의 조치(제 8조로부터 제 19조까지)
- 제 4 장 보칙(제 20조로부터 제 25조까지)

제 5 장 벌칙(제 26조로부터 제 28조까지) 부 칙

제 1 장 총칙, 제 1 조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 법률은 광견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그의 만연을 방지하며 그것을 박멸하므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공공복지의 증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제 2 조에 제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법률은 동물의 광견병 중 개의 광견병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다만, 후생 대신은 개, 소, 말, 면양, 산양, 돼지, 닭 및 오리 기타 동물에 있어서 광견병이 발생되어 공중위생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동물의 종류 기간 및 지역을 지정하여 이 법률의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기간은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가죽위생연구소 해외전염병과 과장(대한수의사회 학술홍보위원)

**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대한수의사회 학술홍보위원장)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법에 대한 주무부서가 일본 농림수산성이 아니라 일본 후생성이라는 점이다. 일본에서도 수의업무의 중심은 농림수산성으로 되어 있으며, 수의사에 대한 국가고시 및 면허증 발급업무도 농림수산성 대신이 책임을 맡고 있고, 국제수역사무국(O.I.E.)에 파견하는 국가 수석수의관(Chief Veterinary Officer; CVO)도 농림수산성 축산국 위생과장이 그 직을 맡고 있다. 다만, 수의공중위생 분야는 후생성에서 관장하고 있는데, 광견병에 대한 기본관리는 인수공통 전염병으로서의 중요성을 인정하여 후생성 관장하에 두고 있다. 참고로 일본에 있어서는 후생성 소속으로 근무하는 수의사의 수사 농림수산성 소속으로 근무하는 수의사의 숫자보다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 3 조에는 지방 행정기관의 장인 도도부현지사는 당해 도도부현 직원인 수의사 면허 소지자를 광견병 예방원이라는 직함으로 임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특정질병에 대하여 특수한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이 제도는 상당히 특이한 것으로 인정된다. 물론, 그러한 예방원은 그러한 사무에 종사할 때에는 그러한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며,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것을 증시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 2 장에는 광견병 발생이 없는 통상시의 조치사항에 대하여 규정해 놓고 있는데, 제 4 조에는 개의 등록에 관한 기본적 사항으로, 개의 소유자는 후생성령으로 정하여진 바에 따라 매년 1회 그 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 지사에게 시정촌장(도의 구가 있는 구역에 있어서는 구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경유하여 개의 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 따라서 일본에 있는 모든 개는 국가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되며, 도도부현 지사는 개의 등록사항을 원부에 등록하고, 그 개의 소유자에게 개의 감찰을 시정촌장을 경유하여 교부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개의 소유자는 규정에 의한 감찰을 그 개에 붙이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러한 개의 등록에 관한 사항은 도도부현

지사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1두 마다 매년에 일정액의 수수료를 징수하게 되어 있다.

제 5 조에는 개에 대한 광견병 예방주사의 실시에 관한 의무조항으로, 개의 소유자(소유자 이외의 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자를 말한다)는 그 개에 대하여 후생성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광견병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아니된다. 그리고 보건소장은 정령으로 정하여진 바에 따라 전항의 예방주사를 맞은 개의 소유자에게 주사제표를 교부하지 않으면 아니되며, 개의 소유자는 전항의 주사제표를 그 개에 붙이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 6 조에는 제 4 조에 규정된 등록을 하지 않거나 개의 감찰을 붙이지 않거나 또는 제 5 조에 규정된 예방주사를 맞지 않거나 주사제표를 붙이지 아니한 개가 있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광견병 예방원은 그 개를 억류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것을 규정해 놓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방견단속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좋은 것으로 인정된다.

제 7 조에는 수출입 개에 대한 검역에 관련된 조항으로 어떤 사람도 검역을 받은 개가 아닌 것을 수출하거나 또는 수입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해 놓고 있으며, 검역에 관한 사무는 농림수산 대신의 소관사항으로 위임해 놓고 그러한 검역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농림성령에 그것을 정하여 놓고 있다(개의 수출입 검역 규칙 참조).

제 3 장에는 광견병 발생시의 조치에 관련된 규정을 정해놓고 있는데, 우선 제 8 조에는 “계출의 의무”로서 광견병에 걸린 개와 광견병에 걸린 것으로 의심되는 개 또는 그러한 개에 물린 개에 대하여, 그것을 진단하였거나 또는 그 사체를 검안한 수의사는 후생성령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계출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다만 수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개의 소유자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규정이 있다. 이러한 계출은 보건소장에게 하게 되어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령의 정하여진 바에 따라 곧바로 그러한 사실을 도도부현지사에게 보고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 다음 보고를

받은 도도부현 지사는 후생대신에 보고하는 동시에 인접 도도부현 지사에 통보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이러한 사항은 우리나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정해져 있는 전염병 발생보고와 유사한 것이다.

그 밖에 제 9 조에는 그러한 개를 진단한 수의사 또는 관련된 자에 대하여 그러한 개를 격리하여야 할 의무조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 10 조에는 공시 및 계류명령, 제 11조에는 예방원의 허가 없이는 그러한 개를 살처분 할 수 없다는 규정이 되어 있고, 제 12 조에는 사체검사와 해부에 관련된 사항, 제 13 조에는 개에 대한 일체검진, 제 14 조에는 병성감정에 관한 기본사항, 제 15조에는 이동제한, 제 16 조에는 교통차단, 제 17 조에는 전람회 등 개의 집합시설에 대한 금지사항, 제 18 조에는 계류중인 개에 대한 약살, 제 19조에는 방역조치의 실시명령의 권한 등에 대하여 기본적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며, 이러한 광견병 발생시 조치사항에 대한 기본규정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더 상세히 규정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다.

제 4 장 보칙에는, 보완적 조치사항으로, 제 20 조에는 공무원이나 수의사는 예방원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협력해야 한다는 것과 제 21 조에는 개 억류소의 설치에 관한 기본적 규정, 제 22 조에는 수수료의 사용에 관한 사항, 제 23 조에는 비용의 부담, 제 24 조에는 권리의 승계에 관한 사항, 제 25 조에는 보건소의 행정관할 구역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다.

참고로 일본에 있어서의 광견병 예방백신의 접종 단가는 예방약대와 부대비용을 포함하여, 예방접종 사업 첫해인 소화 28년(1953년)에는 두당 50엔이었던 것이 매년 가격이 상승하여 소화 63년(1981년)에는 두당 2,000엔까지 올랐으며, 최근 평성 3년(1991년 기준)에는 2,090 엔으로 실시된 바 있다. 이 금액을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두당 15,000원이 넘는 금액이다.

제 5 장은 벌칙으로 앞에서 규정된 각 의무조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벌금(제 26 조와 제 27 조), 구류

또는 과료(제 28 조)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부칙에는 “이 법률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는 것과 이 법률의 개정골자, 개정법률의 발효시기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광견병 예방법 시행령

일본의 광견법 예방법 시행령은 소화 28년(1953년도) 8월 31일에 정령 235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전문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조에는 감찰의 재교부, 제 2 조에는 개의 이동에 관한 계출, 제 3 조에는 주사제표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 제 4 조에는 등록, 감찰, 주사제표의 교부에 필요한 사항 등, 제 5 조에는 억류견에 대한 평가 처분에 관한 사항, 제 6 조에는 계출의 보고사항, 제 7 조에는 약살의 시간과 장소 등, 제 8 조에는 약살의 공고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이 있다.

3. 광견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본의 광견법 예방법 시행규칙은, 소화 25년(1950년도) 9월 22일에 후령 52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전문 1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조에는, 보고서에 관한 사항, 제 2 조에는 광견병 예방원 신분증명서에 관한 사항, 제 3 조에는 개의 등록에 관한 사항이 규정 되어 있는데, 매년 4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등록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 4 조에는 등록일자 및 등록번호에 관한 규정, 제 5 조에는 감찰의 재교부에 관한 사항, 제 6 조에는 주소나 명칭변경 등에 대한 계출사항, 제 7 조에는 개의 이동에 관한 계출사항, 제 8 조에는 개의 사

망 또는 소유권을 방기 했을때의 제출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제 9 조에는 신규 소유자의 제출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 10 조에는 감찰의 교부에 관한 사항, 제 11 조에는 예방주사에 관한 시기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예방주사는 4~6월과 10~12월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개 개체별로 예방주사를 맞아야 하는 횟수는 옛날에는 1년에 2회 접종을 의무화 하였으나 현재에는 1년에 1회를 접종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제 12 조에는 주사제종의 교부, 제 13 조에는 주사제표의 재교부에 관한 규정이 있고, 제 14 조에는 광견병 예방기술원에 대한 신분증표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제 15 조에는 개에 대한 역류사실의 통지에 관한 사항, 제 16 조에는 제출사항, 제 17 조에는 약살에 사용하는 약제(스트리크닌)에 관한 사항, 그리고 제 18 조에는 보건소의 행정관할 구역 등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부칙이 있다.

4. 개의 수출입 검역규칙

일본에 있어서의 개의 수출입 검역에 관한 규칙은, 소화 25년(1950년도) 9월 14일에 농령 103호로 제정되었으며, 그 후 몇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전문 8조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 조에는, 개의 수입검역에 관한 사항, 제 2 조에는 개의 수출검역에 관한 사항, 제 3 조에는 개의 수출입 검역시의 검역기간과 지정지역을 정하는 등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지정지역에 관한 사항은 농림수산성 고시로 별도로 정하여 놓고 있다.

제 4 조에는 검역물(개)을 탑재한 선박과 항공기의 탑재신호 의무가 규정되어있으며, 제 5 조에는 검역

물에 대한 검역기간중 검역물 반출금지 사항, 제 6 조에는 선상검역에 관한 사항, 제 7 조에는 검역증명서에 관한 사항, 제 8 조에는 가축방역관의 신분증표에 관한 사항 등이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이 있다.

일본의 광견병은 고전적인 도시형으로 개에 대한 철저한 예방접종운동을 벌여 1956 에 최종보고된 이래 1957년도부터는 발생보고가 없다. 광견병의 발생은 한 건도 없지만, 지금도 매년 1회 개 예방접종을 계속하고 있다.

세계의 가축과 야생동물의 이동은 증가 일로에 있어 일본의 경우 개의 수입이 연간 약 13,000두에 달하며 그 가운데는 광견병 발생국가로부터 수입되는 것도 많이 포함되어 있다. 그런 상황을 생각할때 본 질병의 무서움을 재인식하여 방역대책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광견병 비발생국의 개, 고양이를 검역방법은 가지각색으로 호주와 영국의 경우 아주 엄격하고, 일본의 경우처럼 비교적 짧은 시간에 마치는 나라도 있는데, 앞으로 점차 간소화 시켜 예방접종 증명서와 충분한 항체의 유무를 중심으로 검사하여 검류기간이 짧아지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들 있다. 앞으로 개, 고양이 이외의 야생동물의 검역에 대해서도 검역규정의 적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고려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광견병 예방법”은 제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등만 가지고도 법규의 준수와 국가 가축방역 사업의 확대, 예방접종 사업의 자발적 이행 등으로, 광견병을 효과적으로 방역 관리 할 수는 있으나 인수공통 전염병 중 가장 무서운 광견병에 대하여만은 “광견병 예방법” 같은 특별법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이 공중위생학적으로나 가축전염병학적으로 볼 때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